

제 18 장 협 력

제 18.1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제20장(분쟁해결)은 이 장 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나 분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2 조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을 통하여 양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협력의 형태 및 분야

2. 제1항에 따른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정책문제에 관한 대화 증진
 - 나. 양 당사국의 민간부문 간 협력의 증진
 - 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포럼에서의 협력의 증진, 그리고
 - 라. 그 밖에 적합한 협력활동 수행
3. 제1항에 따른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공개키기반구조의 상호 호환성
 - 나.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처리·관리·배급 및 무역
 - 다. 제3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그리고
 - 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 자격증의 상호인정

제 18.3 조 전자상거래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선진기법을 공유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연구 및 교육훈련활동에서의 협력을 권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하기 위하여 전자인증을 위한 국내법 규정을 유지한다.
 - 가. 기술 및 시행 모델에 대한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전자 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기술과 시행모델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 나.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거래가 법률 요건을 준수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3. 양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된 표준에 기반한 정부차원의 교차인정 체계를 통하여 전자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의 전자 증명서의 상호 호환성을 권장한다.

제 18.4 조 과학 기술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 경제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활동을 또한 권장한다.
3.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 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
 - 다. 세미나·심포지움·회의 및 그 밖의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
 - 라.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의 시행과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 결과의 교환
 - 마. 과학기술활동 결과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과학기술협력

4.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생명공학

나. 나노기술

다. 전자공학

라. 미소 전자공학

마. 신소재

바. 정보통신기술

사. 제조기술

아. 환경기술. 그리고

자.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

제 18.5 조

금융서비스

규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을 위하여 규제 협력을 증진한다.

가. 건전한 건전성 정책의 시행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운영하는
일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의 증진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금융 서비
스의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다. 적법한 금융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환경의 유지. 그리고

라. 위기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과급효과를 제한하
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시

2. 제1항에 명시된 규제 협력의 일환으로, 양 당사국은 각국의 증권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증권시장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규제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하여 증권시장 및 증권파
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공유 협정을 공식화하도록 권장된다.

3. 제12.5조, 제12.8조, 제12.12조, 제12.13조는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양 당

사국 간 협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의 발전

4. 양 당사국은, 자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거래에서 자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건전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심도와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한다.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거래소를 연계하는 것이 양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연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 18.6 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 당사국의 노력이 양 당사국 간,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의 민간 기업 간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 또는 쌍방이 양 당사국 정부 외의 일방 또는 쌍방이 각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관인 경우, 그 당사자 간의 특정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한 협력은 부속서 18A의 제1절에 명기되어 있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협력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협력 당사자 간 협력제고를 위한 방법 및 분야를 권고한다.

제 18.7 조 서류 없는 전자무역

1. 서류 없는 전자 무역이 양 당사국 간 무역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한

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서류 없는 전자 무역을 실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의 전자적 환경을 위하여 서류 없는 전자무역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서류 없는 전자 무역 관련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그러한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정부 및 기업 간 서류 없는 무역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립 및 운영

나. 전자 무역관련 정보 및 전자문서의 이용 및 교류 방법과 법률기반의 표준화 및 구축을 위한 가능한 조치에 관한 공동연구, 그리고

다. 송장·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무역관련 문서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실현가능한 시험사업의 시행

제 18.8 조

방 송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문화교류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송의 중요성과 방송기술 및 혁신적인 방송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방송 분야에서의 당사국 간 협력을 권장한다.

2. 방송 분야의 협력에 관한 범위·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2절에 명기되어 있다.

제 18 .9 조

환 경

압축천연가스(CNG) 기술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응용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관련단체 및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여, 양 당사국은 당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8.10 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이 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개발하고, 일방 또는 쌍방이 각각의 영토 내에 있는 기관인 경우, 당사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권장한다.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부공무원의 교류

양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 정부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공무원의 교류를 증진한다. 그러한 정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3절에 명기된다.

나. 교육기관 간 협력

양 당사국은 디지털 미디어공학 분야와 같은 양 당사국의 고등 교육 기관 간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출범을 촉진한다.

다. 제3국 연수 프로그램

양 당사국은 의미있고 생산적인 기술 원조를 제3국에 공동으로 제공함에 있어, 특히 제3국의 사회 및 경제 자원을 개발하는데 제3국 공동 훈련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양 당사국 간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제3국 훈련 연수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여, 양 당사국은 제3국 훈련프로그램의 협력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인구 노령화

양 당사국은 인구 노령화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의견 및 경험을 교환한다.

마. 인적자원개발 인증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인적자원개발 인증제(PD)에 관한 의견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 18.11 조 해상 운송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그러한 협력활동

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이 자국의 해기사자격훈련 및 그 밖의 해상응용을 위한 모의훈련기(simulator) 사용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연구방문을 통한 해상모의 훈련교관(maritime simulation instructor)/평가자와 해기사자격증("CoC") 시험관의 교류
- 나. Non-SOLAS 선박의 수송관리, 항해보조장치의 모니터링과 해상투기활동의 감시와 같은 해상 응용을 위한 저가의 자동식별시스템의 개발

2. 양 당사국은 양국이 1981년 5월 26일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해운협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해상협력을 구체화하는데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제 18.12 조

에 너 지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석유/가스 탐사의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촉진
- 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의 촉진, 그리고
- 다. 연구 방문 또는 시행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전기 및 가스 구조조정 노력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제 18.13 조

영 화 제 작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영화 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의 영화 공동제작의 중요성과 그러한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 간 이해 및 문화교류를 증진할 잠재력을 인식하여, 영화제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영화 제작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범위·형태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부속서 18A의 제4절에 명기되어 있다.

제 18.14 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양 당사국은,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잠재력과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양국 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